



국립중앙도서관

국

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특정 다수의 이익 및 공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설립공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익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에 필요한 인력 배양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국가적 인재의 연구 활동 인재를 위하여 학술연구비를 지급하며, 구호 대상자의 인간다움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창강재단"이라 칭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 4 조 (사업)

1. 이 법인의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지급 및 장학사업

2) 학술연구비의 지급

3) 노인·아동 및 관련 복지사업 지원

4) 보육사업지원

2. 제 1 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주차장 시설 관리업

3. 제 2 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법인공익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제 4 조 제 1 항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입을 공익사업과 관련된 다수의 수혜자에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불특정 다수 및 공익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재 산 과 회 계

제 6 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1. 제 6 조 제 3 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의 매수, 기부, 채담,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 1 호 및 제 2 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할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 (경비의 조립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립한다.

제 10 조 (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복역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2.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3)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2) 이 법인의 임원

1) 이 법인의 설립자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제 15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한다.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금하지 아니한다. 다만 설립의 보수는 예외로

제 14 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자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기자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자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제 13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2 조 (회계연도)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1.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제 11 조 (회계원칙)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3. 제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2. 제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제 3 장 민 원

제 16 조 (민원의 종결과 접수)

1. 이 법인에 두는 민원의 종결과 접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 5 인
 - 2) 감사 : 2 인
2. 제 1 항 제 1 호의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 17 조 (상임이사)

1. 제 4 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 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임무 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 년,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 (임원의 선임 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 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임원선임의 제한)

1. 이사회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역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 16 조의 이사 정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1 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1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22 조 (이사장 겸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임무를 돌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1. 이사회는 이사직수의 과반수의 총격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회의의사는 재적이사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재한다.
3. 이사회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총격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 26 조 (의결 정족수)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과 관련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공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결재한다.

제 25 조 (이사회회의 기속)

제 4 장 이 사 회

1. 법인의 재산상환을 감사하는 임
 2. 이사회회의의 공영상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임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임
 4.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때에는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임
 5. 이사회회의 총격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임
 6. 이사회회의 회의록에 기명 부인하는 임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제 24 조 (감사의 직무)

1. 이사장의 사교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권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직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얻어야 한다.
4.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의 직무를 맡아야 한다.

제 23 조 (이사장의 직무 대행)



제 33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다.

제 32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이사회회의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31 조 (서면결의 금지)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회의의 공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외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권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 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 2) 제 24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한다.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령으로부터 20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제 30 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다만, 이사회 소집권이 철회되고 또 그 권원이 이사회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 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9 조 (이사회회의 소집)

이사회는 매년 1 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 28 조 (회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27 조 (의결제척사유)

제 34 조 (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한다

제 35 조 (시행 세칙)
 이 정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36 조 (윤고사항 및 방법)
 법원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서용시내 링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개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 37 조 (법정대표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이사장	안태식	중로구 이화동 25-1
이사	김관희	용산구 신창동 36
이사	원중곤	금평구 역촌동 7-5
이사	이무구	동작구 상도동 256-203
이사	전우탁	강남구 서초동 590 무지개 아파트 9-507
이사	안병표	성북구 안암 5가 110-6
감사	송동민	강남구 청담동 84-19
감사	서우식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대우트림포 월드 8-903
임기		

제 38 조 (회계의 공개)

이 법인은 결산 공개를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에 주무관청 및 국제회계협약에 각각 준수한다. (주무관청 및 국제회계협약 자료제출일은 3월 31일까지 제출하며, 주립, 준주립이 포함될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제 39 조 (기부금단체 의무사항 등)

- 이 법인은 단연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의무를 수행함에,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에 창간재단 인터넷홈페이지와 국제회계협약에 각각 공개한다. (단, 기부금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운사한 경우 해당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한다.)
- 재단법인 창간재단 홈페이지주소는 <http://www.changkang.kr> 개설 운영한다.
- 이 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이상 직접 교육목적사업에 지출한다.

선립 단초의 기본재산 총관표

수원	육가액 (원)	비고	재산구분
현금	50,000,000		기본재산
소계	50,000,000		
현금	10,000,000		보통재산
소계	10,000,000		
			계
	60,000,000		

붙지 1)

이 장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현재의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예금		52,142	기업은행
증권채		6,277,600,000	기업은행
조건자본증권		2,000,000,000	KB금융
조건자본증권		1,000,000,000	국민은행
조건자본증권		1,000,000,000	우리은행
조건자본증권		1,000,000,000	하나지주
주식	110,000 주	550,000,000	유안산업(주)
토지	1,580.5m ²	1,864,990,000	서울시 강북구 덕을로 138
건물	4,783.82m ²	3,254,458,430	"
		16,947,100,572	



(재)창강재단 정관 산/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총량표	수량 평가액	비교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총량표	수량 평가액	비교
	현재의 민원현황	현재의 민원현황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안병표	서울시 강남구 삼우동 433	4	
이사	김영봉	인천직할시 중구 하늘빛로 86, 923 동 403호	4	
이사	이산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동로 350, 527 동 204호	4	
이사	박해균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926 번길 137, 221 동 1304호	4	
이사	강영승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64길 15, 104동 402호	4	
감사	조만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군화대로 36 가길 23-06, 401호		
감사	서우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A 동 906호		
	계	16,947,100,572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교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교	
예금	기업은행	52,142	기업은행	52,142
예금	기업은행	6,277,600,000	기업은행	6,277,600,000
증금채	기업은행	11,277,600,000	기업은행	11,277,600,000
주식	창강산업(주)	110,000 주	창강산업(주)	550,000,000
토지	서울시 강북구	1,580.5m ²	서울시 강북구	1,864,990,000
토지	서울시 강북구	4,783.82m ²	서울시 강북구	3,254,458,430
건물	서울시 강북구	4,783.82 m ²	서울시 강북구	3,254,458,430
건물	서울시 강북구	4,783.82 m ²	서울시 강북구	3,254,458,430
계	16,947,100,572			

개 전 안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총량표



#삭제
현재의 민원현황(삭제)

<p>제4조(사명)</p> <p>1. 이 법인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의 목적사업을 행한다.</p> <p>(1) 장학금 지급 및 장학사업 (2) 학술연구비 지원 3) 노인·아동 및 관련 복지사업 지원 4) 보육사업 지원</p>	<p>제4조(사명)</p> <p>1. 이 법인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의 목적사업을 행한다.</p> <p>(1) 장학금 지급 및 장학사업 (2) 학술연구비 지원 3) 노인 및 아동복지사업 지원 4) 보육사업 지원</p>
<p>개 원 (인)</p>	<p>원 해 (년)</p>

(제) 장학재단 인/구 원금 금회(회) 표비대공